

퇴직연금전용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퇴직연금전용 정기예금
- 상품특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운용 계약서 등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상품유형	정기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전문 ▶ 해지 : 전문
가입금액	1원 이상
가입기간	▶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만기에 최초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약정이율 (연, 세전)	▶ 약정이율 : 매월 변경 고시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 재예치시마다 재예치시점의 약정이율로 변경 적용.
추가 우대 이율	없음
중도해지 이율 (연, 세전)	■ 일반중도해지이율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u>경과기간별</u> 일반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 ■ 특별중도해지이율 1. 계약기간이 3월, 6월, 1년인 계약 신규 또는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고시이율 2. 계약기간이 2년, 3년, 5년인 계약 가. 2년 미만 예치시: 신규 또는 재예치 시점의 1년제 퇴직연금전용 정기예금 고시이율

	<p>나.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 시: 신규 또는 재예치 시점의 2년제 퇴직연금 전용정기예금 고시이율</p> <p>다. 3년 이상 예치 시: 신규 또는 재예치 시점의 3년제 퇴직연금전용 정기예금 고시이율</p>
만기 후 이율 (연, 세전)	없음 (자동재예치)
이자 지급방식	<p>▶ 만기일시 지급식 이자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p> <p>▶ 신규일(또는 재예치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p> <p>- 예금금액 × 이율 × 일수 ÷ 365 (원미만 절사)</p>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등
연계·제휴 서비스	없음
계약의 해지	<p>■ 특별중도해지</p> <p>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만기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중도인출의 경우 8. 퇴직연금제도의 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9. 수수료의 징수 <p>■ 분할인출</p> <p>- 만기해지 포함 3회 이내에서 가능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연장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인출 가능)</p> <p>단, 특별중도해지시에는 분할인출 횟수 제한 없음</p> <p>-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p>

	-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분할인출 횟수에서 제외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재예치	만기에 최초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예금자보호여부	확정기여형 (DC)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확정급여형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p>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또는 그 거절사유를 통지합니다.</p>	
휴면예금 및 출연	<p>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p> <p>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p>	
자료열람요구권	<p>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p>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p> <p>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3.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SC제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기타 유의사항

■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에 대한 거래통장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민원처리절차 및 분쟁조정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15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